

의안번호	제582호
의 결 연 월 일	2013년 월 일 (제325회)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자	충청북도지사
제출연월일	2013년 12월 2일

법무통계담당관 심사를 마침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582
------------	-----

제출연월일 : 2013년 12월 2일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사유

-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직종개편과 관련하여, 위임된 전보권 및 임용권 관련 변경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의회사무처장에게 위임하는 임용권 정비
 - 일반직공무원 임용권 범위 명시를 위한 단서 신설
 - '기능직공무원' 삭제, '계약직공무원' → '임기제공무원' 명칭변경
- 직속기관, 사업소장 및 출장소장에게 위임하는 전보권 정비
 - '기능직공무원' 삭제 : 12건
-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는 임용권 정비
 - '기능직 및 계약직공무원' → '임기제공무원'

3. 의안전문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5. 관계법령 발췌 : 붙임

6.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충청북도조례 제 호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충청북도의회 사무처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제2조제2항 관련)

분야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총무과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5급이하 일반직공무원의 의회사무처 내 전보권 <u>(단,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3조의2 별표7의2에 해당하는 일반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임용권을 위임)</u> · 별정직 ·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자치법 제91조,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 <u>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3조의2</u>

[별표 4]

직속기관, 사업소장 및 출장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제2조제4항 관련)

분야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위임대상 기 관	근거법령
총무과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6급이하 <u>지방공무원</u>의 학내 전보권 부교수이하 임용권 	충북도립 대학총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 교육공무원법 제55조제5항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5급이하 <u>지방공무원</u>의 원내 전보권 	자치연수 원 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6급이하 <u>지방공무원(지도사·연구사 포함)</u>의 원내 전보권 5급 상당 <u>지방연구관</u>·지도관의 공무원의 원내 전보권 (연구소장 및 시험장장은 제외) 	농업기술 원 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6급이하 <u>지방공무원(연구사 포함)</u>의 원내 전보권 	보건환경 연구원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6급이하 <u>지방공무원</u>의 소내 전보권 	도로관리 사업소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6급이하 <u>지방공무원(연구사 포함)</u>의 소내 전보권 	산림환경 연구소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6급이하 <u>지방공무원(연구사 포함)</u>의 소내 전보권 	축산위생 연구소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6급이하 <u>지방공무원(연구사 포함)</u>의 소내 전보권 	농산사업 소 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6급이하 <u>지방공무원</u>의 소내 전보권 	청남대관리 사업소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6급이하 <u>지방공무원(연구사 포함)</u>의 소내 전보권 	내수면 연구소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6급이하 <u>지방공무원</u>의 소내 전보권 	북부 출장소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6급이하 <u>지방공무원</u>의 소내 전보권 	남부 출장소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

[별표 5]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제2조제7항 관련)

분야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거법령
총무과	1	<ul style="list-style-type: none">지방 5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의 청내 전보권<u>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임용권</u> (단, 개방형 직위는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u>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u> <u>제27조의4 및 같은 법</u> <u>시행령 제28조의2</u>

관련 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91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명) ①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조례로 정한다.

②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추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무직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은 지방의회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에게 위임하여야 한다.

1. 별정직공무원

2.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직공무원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 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 ④ (생략)

□ 지방공무원법

제6조(임용권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의 임명·휴직·면직과 징계를 하는 권한(이하 "임용권"이라 한다)을 가진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용권을 가지는 자는 그 권한의 일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기관, 그 소속 기관의 장, 지방의회의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 또는 교육위원회의 의사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생략)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의4(임용권의 위임 등) ① 시·도지사는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의 일부를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 ⑦ (생략)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8조의2(임용권의 위임 등) ① 시·도지사는 법 제27조의4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한다.

1. 경제자유구역청 소속 일반직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2. 경제자유구역청 소속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② (생략)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3조의2(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용권을 위임하는 일반직공무원의 범위) 법 제91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직공무원”이란 별표7의2에 따른 공무원을 말한다.

[별표 7의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에게 임용권을 위임하는 지방의회 일반직공무원의 범위 (제63조의2 관련)

1. 「지방공무원법」 제4조제2항 및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제1항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
2. 「지방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9조 제1항에 따라 전담직위에 임용된 공무원
3.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1에 따른 행정직군 속기직렬 공무원
4.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1에 따른 행정직군 방호직렬 공무원
5.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1에 따른 기술직군 위생직렬 공무원
6.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1에 따른 기술직군 조리직렬 공무원
7.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1에 따른 기술직군 간호조무직렬 공무원
8.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1에 따른 기술직군 시설관리직렬 공무원
9.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1에 따른 기술직군 운전직렬 공무원
10.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1에 따른 관리운영직군 공무원